

2023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통합 공고(2차)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7월 3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 **(과제명)**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 **(사업목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및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지원기간)** 2023. 8. ~ 2023. 11. (약 4개월)

2. 지원대상(신청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이며,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절차)** 협약체결 및 관련 서류(사업계획서 외) 제출 등 필요 조건 충족 후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금은 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후 직접 지원

※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유형	프로그램	지원내용	지원규모
1. 기술개발 패키지	R&D 기획지원	· 정부 및 지자체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5백만원 (11개社 내외)
2. 판로개척 지원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지원	· (온라인)개발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SNS, 온라인 쇼핑몰 운영,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펀딩(와디즈 등) 참가 등 · (오프라인)개발된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부스 운영비, 바이어 미팅 등	10백만원 이내 (3개社 내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매칭(부가세 제외)

예1) R&D기획 : 총사업비 500만원 = 지원금(450만원) + 기업부담금(50만원) + 부가세(5만원)

예2) 판로개척 : 총사업비 1.100만원 = 지원금(1,000만원) + 기업부담금(100만원) + 부가세(110만원)

※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음.

※ 기업당 유형별 중복 신청 가능 : R&D기획지원 + 판로개척 지원

4. 신청방법

- 울산TP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http://platform.utp.or.kr>)을 통한 신청서 접수

5.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 공통양식(표지)은 신청 건마다 별도 작성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양식1] 작성 ※ R&D기획지원 사업은 [세부사업 양식2] 작성	첨부양식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첨부양식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양식
5	2020~2022년 재무제표	
6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 내)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정부24홈페이지 발급 가능

6. 평가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표)

구분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기업일반 (20)	기업역량	- 지원기업의 특허출원 및 수상실적	10
	기업의 안정성	- 기업의 안정성 및 성장성(재무평가)	10
수행계획의 타당성 (60)	기술 및 제품 경쟁력	- 개발(또는 개선) 기술 및 제품의 특성, 경쟁력이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차별성 보유 유무	10
		- 기술 및 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과 수익성	10
	신청내용의 적정성	- 추진일정, 목표 및 내용 등 사업의 타당성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비용의 적절성 - 기술창업 부합성	20
	시급성	- 기술개발, 애로 해결의 시급성	20
기대효과 (20)	경제적 기대효과	- 매출 확대 등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 해외 수출 확대 가능성	10
	기술적 기대효과	- 지원 후 기대되는 기술적 효과 (기술선점, 공정개선, 지재권 획득 등)	10
합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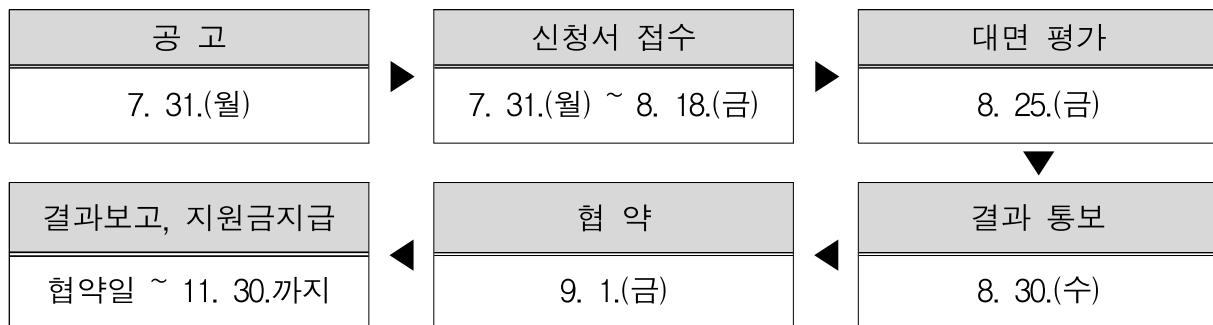
- **(평가기준)**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60점 이상의 지원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실사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3~5인 내외)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1차 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 2차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8.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2023년 7월 31일(월) ~ 8월 18일(금) 18:00 까지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 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 또는 대표이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항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 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1. 문의처

-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실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술창업보육실
- 담당자 연락처
 - 전화번호 : (052)277-1996~7
 - 메일주소 : jyj0119@utp.or.kr, page01@utp.or.kr

□ 불 임

1. 사업신청서_공통양식(표지 등) 1부.
- 2-1. 사업신청서_세부사업(양식1) 1부.
- 2-2. 사업신청서_세부사업(양식2) 1부. 끝.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 강화 지원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5백만원 이내(VAT 제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필수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 7년 이내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이며,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인 경우
 -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 R&D 기획 : 정부 및 지자체 R&D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 지정된 전문서비스 공급기업(관)과 연계하여 직접 지원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지원유형	NO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목표	지원금
기술개발 패키지	1	R&D 기획지원	- 창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	11개社 내외	5백만원 (VAT 제외)

제출서류

- [공통양식] 참조
 - 신청서,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유형-2

판로개척 지원 상세내역

□ 프로그램 개요

- (지원목표) 기술창업 아이템 및 기업 홍보를 통한 매출 창출 기여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VAT 제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금의 10% 이상 필수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창업 개시 7년 이내인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이며,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등록증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인 경우
 - ※ 상기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내용) 기업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한도 내 지원
 - 온라인 판로지원(SNS,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크라우드 펀딩 등)
 - 오프라인 판로지원(국내외 전시참가비, 부스 운영비, 해외바이어 미팅 등)
 - ※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신청 가능

□ 상세 프로그램 내용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지원유형	NO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목표	지원금
판로개척 지원	2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지원	- 창업 개시 7년 이내의 기업	3개社 내외	10백만원 이내 (VAT 제외)

□ 제출서류

- [공통양식] 참조
 - 신청서,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